

##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,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과태료 20%감경 조치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일

의 성 군



1. 제 목 :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법적근거 : 도로교통법 제32조, 제33조, 제34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제18조
3. 대 상 자 : 불 임
4. 공고기간 : 2020.4.2 ~ 2020.4.16(15일간)
5. 주 ·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내 의성군청 일자리창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FAX(054-834-7018)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으며,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60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